

제1481호  
1990.3.30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고 건수  
편집인: 공 본 관 유 현 수  
전화: 731-C111~3  
인쇄: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35-3337

# 시 보

## 차 례

● 조 례	
제2597호 서울특별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	2
제2598호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3
● 규 칙	
제2332호 서울특별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및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6
제2333호 서울특별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9
● 고 시	
제 92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9

(이면계속)

인										
관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 공 고

제 143 호 도시계획사업(유수지)실시계획공람공고 ..... 9

제 168 호 기술용역사업집행계획추가공고 ..... 11

제 175 호 신문로2구역제2지구개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 ..... 12

제 180 호 관인교부공고 ..... 12

제 181 호 관인재교부공고 ..... 14

제 188 호 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해제 ..... 14

● 구 고 시

제 1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강남구) ..... 14

제 2 호 민영주택건설사업 (강남구) ..... 15

제 3 호 주택개발사업관리구역분양처분 (종구) ..... 15

제 7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노원구) ..... 16

제 9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 (성북구) ..... 16

제 12 호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변경시 성행허가 (성동구) ..... 17

● 구 공 고

제 18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강서구) ..... 17

제 26 호 도시계획안공고 (성북구) ..... 18

제 28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서대문구) ..... 19

제 36 호 도시계획사업(공원시설설치)석촌호수공원1단계보안시설관리위탁 (송파구) ..... 19

제 105 호 관인재교부및폐기공고 (서초구) ..... 20

● 사 령

조 례

●서울특별시조례제2597호

서울특별시하천수의자부담금징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하천수의자부담금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부과대상자) ①부담금은 서울특별시

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하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시행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에게 이를 부과한다.

1. 하천의 신설·개축 또는 보수
2. 하수공작물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②제1항에서 "현저한 이익"이라 함은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사준공당시의 토지가격이 당해 공사의 시행공고(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최초와 시행공고를 말한다.

<p>이하 같다) 당시의 토지가격에 당해 토지 가격의 자연상승치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p> <p>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p> <p>①부담금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저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되, 당해 공사에 소요된 비용 (보상비등을 포함한다)의 3분의2를 초과하지 못한다.</p> <p>제4조의 제목 및 제1항중 “토지등의 가액”을 각각 “토지의 가격”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1년2월”을 “10월”로 한다.</p> <p>제5조중 “전조”를 “제4조”로, “1년6월이내”를 “1년이내”로 한다.</p> <p>제10조중 “30일이내”를 “60일이내”로 한다.</p> <p>제12조중 “토지등의 가액결정”을 “토지가격의 결정”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하천수익자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서울특별시조례2598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 수수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	--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계중명 확인 발급사항 (18종)

종 목	단 위	수 수 료 액	비 고
가.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화 계 증 명	1건	550원	
(2) 소방시설증명	"	550원	
(3) 수출용 원자재 소요량 증명	"	1,500원	
(4) 매장·화장에 관한 증명	"	350원	
나. 주소·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 운전경력 (무사고)증명	"	350원	
(2) 국제결혼 증명	"	3,300원	
다.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 환지에정지 변경신청	1필지	350원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2) 채비지 분합신청	1필지	350원	
(3) 토지대금 완납증명	1건	350원	
라. 회계관계증명			
(1) 물품납품 실적증명	1건	350원	
(2)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 보증금 보관 확인증	"	350원	
(3)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명	"	350원	
(4) 물품 또는 공사사실증명		350원	
바. 자동차에 관한 증명			
(1) 자동차 제증명	1건	1,000원	
마. 기타 제증명			
(1)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	1건	350원	
(2) 공부의 등본·초본·하부원본	1건	350원	
(3) 기타 사실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건	350원	
사. 각종 공부 열람	1시간	100원	(초과료10분 당100원)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등 사항 (11종)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인가	1건	550원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2) 아취 및 육교 사용 허가	1건	550원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시유재산 대부 (계속대부) 신청	-	550원	
(2) 시유재산 매수신청	-	550원	
(3) 사설시장 개설 및 경신신청	-	550원	
(4) 채비지 명외변경 신청서	-	550원	
(5) 토지사용 (채비지)승략서	-	550원	
(6) 채비지 확인서 (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	-	550원	
(7) 채비지 소유자 확인원	-	550원	
(8) 입찰참가 신청	-	550원	
다.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이하의 배	1척	1,000원	
(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 이하의 배	-	1,400원	
(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이상 20인이하의 배	-	2,100원	
(4)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	2,800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제2332호

**서울특별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및  
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및특별회계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 ①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하수도사용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폐기물수집수수료 및 텔레비전방송수수료(이하 "통합공과금"이라 한다)의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공과금의 조정 및 수납판리의 업무를 전산처리기관과 계약하여 전산처리한다.

③ 시장은 금융기관 (한국은행 및 외국은행을 제외한다) 및 서울채신청과 각각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납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제3조(납기) ① 통합공과금은 매월 수납하되, 납기는 매월 3회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는 매월1일부터 10일까지의 점침 및 실사분에 대하여는 다음달 20일까지로 하고, 11일부터 20일까지의 점침 및 실사분에 대하여는 다음달 말일까지로 하며, 21일부터 말일까지의 점침 및 실사분에 대하여는 다음 다음달 10일까지로 한다.

제4조(독촉장발부) 구청장은 납기내에 통

합공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고지서발행) 구청장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거나 고지된 금액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자료통보 및 징수결정) ① 동장은 점침일정에 따라 매일 점침부 및 변동자료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장이 보고한 자료를 4일 또는 5일분씩 취합 점검하여 납기별로 전산처리기관에 전산처리를 의뢰한다.

③ 구청장은 전산처리기관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폐기물수집수수료는 구청장이 징수결정한다.
2. 상.하수도사용료는 상.하수도 특별회계 분임징수관에게 통보한다.
3. 전기료, 텔레비전방송수수료 및 도시가스사용료는 해당 위탁기관에 통보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통합공과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동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받은 동장은 이를 3일 이내에 처리하되,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처리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특례규정) 통합공과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과 다른 규칙이 서로 저촉될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 1 호 서식 ]

**월경침본**      년 월 일 **통합공과금 영수증 (수용가)** (보관용)

성명: \_\_\_\_\_ 주소: \_\_\_\_\_

구분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가스요금	열선요금	TV수신료	기타
납기내							
납기후							
합계							

위 공과금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청장      (수납인)

이 공과금을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공과금관 운영 목적에 따라  
 공과금관 운영 목적을 목적으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수용가 보관용

**년 월 일 통합공과금영수증 (수납인)**      납기본

성명: \_\_\_\_\_ 주소: \_\_\_\_\_

구분	납기내 금액	납기후 금액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가스요금		
열선요금		
TV수신료		
합계		

미수금 \_\_\_\_\_      (수납인)

년 월 일      (수납은행 보관용)

수납은행 보관용

**년 월 일 통합공과금고지서 및 수납필동지서 (수납인)**      O C R

성명: \_\_\_\_\_ 주소: \_\_\_\_\_

수용가 번호: \_\_\_\_\_      납기본

\* 이 용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아래난이 어렵지 않도록 주의하여주십시오.

H \_\_\_\_\_

구분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가스요금	열선요금	TV수신료
납기내						
납기후						
합계						

미수금 \_\_\_\_\_      (수납인)

년 월 일      (수납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수납인)

미수금이 기재된 고지서는 가 납부한 용수료를 차감 또는  
 전월미납금과 동시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기관 보관용

[ 별지 제 2 호 서식 ]

**년 월 일 통합공과금채납납입영수증 (수납인)**      납기본

성명: \_\_\_\_\_ 주소: \_\_\_\_\_

구분	납기내 금액	가산금	납기후합계금액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가스요금			
합계			

\* 이미 공과금을 내셨으면 이 독촉장을 폐기하십시오.  
 의 공과금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청장      (수납인)

수납기관 보관용

**년 월 일 통합공과금채납수납의뢰서 (수납인)**      납기본

성명: \_\_\_\_\_ 주소: \_\_\_\_\_

구분	납기내 금액	납기후 금액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가스요금		
열선요금		
TV수신료		
합계		

년 월 일      (수납인)

수납기관 보관용

수납기관 보관용

**독촉장**      년 월 일 **통합공과금납부독촉 및 수납필동지서 (수납인)**      O C R

성명: \_\_\_\_\_ 주소: \_\_\_\_\_

납기년월일: \_\_\_\_\_      통합수용가 번호: \_\_\_\_\_      납기내금액: \_\_\_\_\_      가산금: \_\_\_\_\_      납기후합계금액: \_\_\_\_\_

\* 이 용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아래난이 어렵지 않도록 주의하여주십시오.

H \_\_\_\_\_

구분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가스요금	열선요금	TV수신료
납기내						
납기후						
합계						

년 월 일      (수납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수납인)

납부기관 보관용

별지 제 3 호서식

년 월분 통합공과금 **특수정액수납** 고지서 (신용카드 등 이용)

상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동 115-1 (신대저항)

수용기 번호: [ ]

납기내: 년 월 일까지  
납기후: 년 월 일까지

구분	당월지침	전월지침	사용량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가스요금					
일반전화요금					
TV시상료					
합계					

금감자통북번호: 한국전력 - - 도시가스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인: [ ]

년 월 일

수용기 보관용

년 월분 통합공과금 **특정액회사의** 고지서 (신용카드 등 이용)

상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동 115-1 (신대저항)

수용기 번호: [ ]

납기내: 년 월 일까지  
납기후: 년 월 일까지

구분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가스요금		
일반전화요금		
TV시상료		
합계		

미수금: [ ]

수납인: [ ]

년 월 일

수납은행 보관용

년 월분 통합공과금 **특정회사의** 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 (신용카드 등 이용)

상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동 115-1 (신대저항)

수용기 번호: [ ]

납기내: 년 월 일까지  
납기후: 년 월 일까지

구분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구분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전기요금			일반전화요금		
상수도요금			TV시상료		
하수도요금			합계		
가스요금					
합계					

상수도: 일반요금 [ ]

미수금: [ ]

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우체국 및 은행 (중·수축합 포함)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국은행, 외국은행 제외)

서울특별시 구청장  
\*이종이는 컴퓨터처리로므로 구겨지거나 아래 난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주시요.



◎서울특별시규칙제2333호

서울특별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시행규칙증개정규칙

서울특별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 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중 “그  
보상에 요하는 비용”을 “그 보상에 요하는  
비용(감정비용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  
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하천수익자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가. 사업개요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사업의 규모 명칭	사업 규모
구의동 215번지 -588번지간	도시계획사업 (도로)	강변역앞 주차장 조성공사	B= 80m L=135m
구의동 589번지 일대	"	동서울터미널 진입로 확장공사	B= 20m L= 75m
자양동 553-609 ~553-289간	"	독섬길 보도 및 연결도로 정비 공사	B= 6m L= 86m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성동구청장)

다. 사업착수 및 준공연월일 : 인가일로부터  
'91. 12. 31까지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외소재지,  
지면,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마.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와 보지 수용  
법 제4조 3항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  
명 : 별첨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92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공고제127호('90. 3. 10)호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따른 공람공고한 바  
있는 도로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25조와 제26조 및 동법 시  
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도로)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 제26조에 의  
거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성동 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  
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3. 30

서울특별시장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143호

도시계획사업(유수지)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제506('88. 6. 4)호로 도시  
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 승인된 유수지 시  
설공사구간의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니(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갈음)의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조경부, 강서구청 건설관리과

나. 공람 공고기간 : 1990. 2 - 1990. 3  
1990. 3  
서울특별시  
- 공람개요 -

가. 사업시행지 : 강서구 마곡동 41번지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도시계획사업(유수지 시설)  
○명칭 : 마곡유수지 배수펌프장 시설공사  
다.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라. 사업개요 : 유수지 용량 300,000㎥  
(면적 121,105㎡), 엔진펌프(1300PS)5대,  
모터펌프(1200HP) 5대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1988. 9. 12 - 19991. 12. 31  
바. 변경이되는 토지 및 수용할 건물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당초 실시계획인가서 수록 고시되어 변동이 없는 조서는 생략) 끝

○수용할 건물 및 치장물 조서

연번	소재지	종류	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마곡동 37-8	주택	62.15㎡	강서구 마곡동 37-8	신호섭	강서구방화동 597-30	강서단위농업협동조합	
2	" 37-9	"	59.24㎡	" 37-9	배철홍	중구남대문로 2가-19-1	(주)국민은행 여의도지점	
3	" 27-30	"	70.0	영등포구 목동 264-3(양천구)	양동농지개량조합			
4	" 15-3	공장(명성)	영업권 및 기계장치1식	강서구 마곡동 15-3	박영관			
5	" 15-6	공장(통신기업)	"	용산구 원효로2가 251-2 140-112	윤치환우			
	"	건물	110.08㎡	중구 수하동 26 100-210	장석창			
6	" 15-2	공장	영업권 및 기계장치1식	양천구 목동아파트 114동 102호	신용균			
	"	건물(점포)	103.47㎡	"	"			
	"	건물(창고)	63.9㎡	"	"			
7	" 258-1	유류저장탱크(천일)	24,000ℓ × 4개 18,000ℓ × 1개	원주시 태창동 868-3	김병호			
	"	"	영업권 및 기계장치1식	"	"			

연번	소재지 번	종 류	수 량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8	마곡동 27-22	석재공장 (동명)	영업권 및 기계장치1식	강서구 마곡동 1126-2 현대빌딩 106호	김동수			
9	" 28-4	건 물	79.6㎡	관악구 동작동 307 (동작구)156-060	이상섭			
	"	공 장 (우성기계)	영업권 및 기계장치1식	강서구 마곡동 28-4	임대성			
	"	공 장 (대흥금속)	"	"	우동진			
	"	고 물 상 (신평)	영업권1식	마포구 염리동 173-6 121-090	우동식			
10	" 27-1	건 물	2동 200.35㎡	강서구 마곡동 27-1	김화경			
	"	공 장 (합성유화)	영업권 및 기계장치1식 유류탱크7개	"	"			
	"	공 장 (성안화학)	영업권 및 기계장치1식	"	구기홍			
11	" 32-7의10	비닐하우스	14동 7,928.28㎡	강서구 방화동 559-5	김현오			
	"	팜 프 대추 나무	5개 349주	"	"			
<p>◎서울특별시공고제168호</p> <p>기술용역사업집행계획추가공고</p> <p>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업 시행령 제57</p>				<p>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 니다.</p> <p>1990. 3. 30</p> <p>서울특별시</p>				
구분	용역명	지하철 5호선 도심 구간 토목실시설계	지하철 5호선 거여 구간 토목실시설계	지하철 7호선 기본설계	지하철 7호선 상북 구간 토목실시설계			
시행기간		지하철건설본부	지하철건설본부	지하철건설본부	지하철건설본부			
주요사업 내역		구간: 여의도- 왕십리 연장: 13km	구간: 길동4거리- 거여 연장: 7km	구간: 상계-화양 -광명 연장: 42km · 기본설계 · 정거장건축실시 설계 · 환경 및 교통영 향평가	구간: 상계-화양 연장: 16km · 본선 및 정거장			

구분	지하철 5호선 도심구간 토목실시설계	지하철 5호선 거역구간 토목실시설계	지하철 7호선 기본설계	지하철 7호선 강북구간 토목실시설계
총사업비	29억원	15억원	40억원	* 37억원
'90사업비	10억원	6억원	20억원	17억원
입찰예정시기	1990. 4.	1990. 4.	1990. 4.	1990. 4.
기타참고사항	· 계약방법: 예산회계법 및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함. · 세부사항은 지하철건설본부 건설부(전화: 773-6570, 6640)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175호

신문로2구역제2지구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제317호('83. 9.30)로 재개발구  
역 지정되고 서울시고시제234호('84. 4. 27)의  
동고시 제221호('89. 5. 4)로 사업계획결정  
및 변경결정된 신문로2구역 제2지구에 대  
하여 서울시고시제270호('89. 6. 13)로 도  
시재개발사업 제3개발자로 지정을 받은 세  
안개발(주) 대표 전창희로부터 재개발사업  
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공고  
일로부터 3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사업시행 구역내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을 제  
출할수 있으며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  
에게 개별 통지 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  
어는 본 공고로 통지에 갈음합니다.

1990. 3. 29  
서울특별시

가. 공람사항

- 1) 재개발사업명칭: 신문로2구역 제2지구
2. 판인 교부 내역

재개발사업

- 2) 시행구역 및 면적
  - 시행구역: 신문로2구역제2지구(종로구  
신문로1가 187-1번지 외 40필지)
  - 시행면적: 4,551.3㎡
- 3) 사업시행자: 종로구 신문로1가 187-1  
세안개발(주) 대표 전창희
- 4) 공람내용: 사업시행 계획서 및 규약
- 5) 공람기간: '90. 3. 29 '90. 4. 28
- 6) 공람장소: 서울특별시 주택국 재개발과

◎서울특별시공고제180호





판인교부공고

서울특별시 산하 중랑구청장의 5개구청장  
의 판인을 판인규정 제2조, 제4조 및 제5조  
와 서울특별시 판인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교부함을 통 규정 제9  
조 및 통규칙 제8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990. 3. 29

서울특별시

1. 사용개시일자: 1990년 4월 2일

	신 규				
인영					
공인명	중랑구청장인 (중화1동 중계 민원사무용)	중랑구청장인 (중화2동 중계 민원사무용)	중랑구청장인 (중화3동 중계 민원사무용)	중랑구청장인 (목1동 중계민 원사무용)	중랑구청장인 (목2동 중계민 원사무용)

	신					규					
인 영											
공인명	도봉구청장인 (미아계6동 중계민원사무용)	도봉구청장인 (미아계7동 중계민원사무용)	도봉구청장인 (창계3동 중계민원사무용)	도봉구청장인 (창계4동 중계민원사무용)	도봉구청장인 (도봉계2동 중계민원사무용)	노원구청장인 (월계1동 중계민원사무용)	노원구청장인 (월계2동 중계민원사무용)	노원구청장인 (월계3동 중계민원사무용)	노원구청장인 (공릉계1동 중계민원사무용)	노원구청장인 (공릉계2동 중계민원사무용)	
인 영											
공인명	영등포구청장인 (신길계7동 중계민원사무용)	영등포구청장인 (신길계2동 중계민원사무용)	영등포구청장인 (영등포계1동 중계민원사무용)	서초구청장인 (반포본동 중계민원사무용)	서초구청장인 (반포계4동 중계민원사무용)	서초구청장인 (방배계2동 중계민원사무용)	서초구청장인 (양재동 중계민원사무용)	서초구청장인 (내곡동 중계민원사무용)	송파구청장인 (마천계1동 중계민원사무용)	송파구청장인 (마천계2동 중계민원사무용)	송파구청장인 (거여동 중계민원사무용)

<p><b>●서울특별시공고제181호</b></p> <p style="text-align: center;">관 인 재 교 부 공 고</p> <p>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소장의 관인 을 관인규정 제2조, 제4조 및 제8조와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함을 통 규정 제9조 및 통 규정 제8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 3. 29 서울특별시 1. 사용개시 및 폐기일자: 1990년 4월 2일 2. 관인 재교부 내역</p>				<p>인 영</p> <p>폐기 </p> <p>신규 </p>			
<p><b>●서울특별시공고제188호</b></p> <p style="text-align: center;">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해제</p> <p>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자 영업정지 해제처분을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 4. 1 서울특별시</p>							
등 록 번 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영업정지 일 자	영업정지 기 간	영업정지 해제일자	관련근거 법령조항
84- 281	대호건영 (주)	전명옥	성동구 하왕십리 946-15	'90. 2. 28	'90. 3. 1 3. 31	'90. 4. 1	주택법시 행령제10 조의 3
86- 115	(주) 지원주택	지동화 김창식	성동구 자양동 681-2	"	"	"	"
86- 300	(주) 이영건설	하영찬	성동구 화양동 29-22	"	"	"	"
<p><b>구 고 시</b></p> <p><b>●강남구고시제1호</b></p> <p style="text-align: center;">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p> <p>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45</p>				<p>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 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 3. 30 강 남 구 청 장</p>			

<p>1. 사업명: 민영주택 건설 사업                  2. 사업주체: 보건사회부의 5개 직장(지역) 주택조합장 신인섭의 5명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규모                  가. 위 치: 청담동 134의 8필지                  나. 대지면적: 6,635.8㎡                  다. 건축연면적: 19,578.87㎡                  라. 규 모: 아파트 1동 15층 172세대                  마. 사업시행기간: '90. 3. - '91. 5.</p>	<p>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3. 30                  강남구청장 ㉔</p>																																																
<p>◎강남구고시제2호</p> <p style="text-align: center;">민영주택건설사업승인</p> <p>강남구 도곡동 906번지의 49필지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폐지)에 대하여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의</p>																																																	
<p>2.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폐지) 결정조서</p>																																																	
<table border="1">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규 모</th> <th rowspan="2">폭원</th> <th rowspan="2">연장</th> <th rowspan="2">기 점</th> <th rowspan="2">종 점</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등급</th> <th>유별</th> </tr> <tr> <td>기</td> <td>소로</td> <td>2</td> <td>8m</td> <td>85m</td> <td>도곡동 907-32</td> <td>도곡동 907-39</td> <td></td> </tr> <tr> <td>변경</td> <td>소로</td> <td>2</td> <td>8m</td> <td>0</td> <td>도곡동 907-32</td> <td>도곡동 907-39</td> <td>폐지</td> </tr> </table>	구분	규 모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유별	기	소로	2	8m	85m	도곡동 907-32	도곡동 907-39		변경	소로	2	8m	0	도곡동 907-32	도곡동 907-39	폐지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규 모</th> <th>폭원</th> <th>연장</th> <th>기 점</th> <th>종 점</th> <th>비고</th> </tr> <tr> <td>기</td> <td>소로</td> <td>2</td> <td>8m</td> <td>85m</td> <td>도곡동 907-32</td> <td>도곡동 907-39</td> </tr> <tr> <td>변경</td> <td>소로</td> <td>2</td> <td>8m</td> <td>0</td> <td>도곡동 907-32</td> <td>도곡동 907-39</td> <td>폐지</td> </tr> </table>	구분	규 모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고	기	소로	2	8m	85m	도곡동 907-32	도곡동 907-39	변경	소로	2	8m	0	도곡동 907-32	도곡동 907-39	폐지
구분		규 모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유별																																															
기	소로	2	8m	85m	도곡동 907-32	도곡동 907-39																																											
변경	소로	2	8m	0	도곡동 907-32	도곡동 907-39	폐지																																										
구분	규 모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고																																											
기	소로	2	8m	85m	도곡동 907-32	도곡동 907-39																																											
변경	소로	2	8m	0	도곡동 907-32	도곡동 907-39	폐지																																										
<p>3. 도면: 별첨과 같음(생략)                  4. 기타: 관계도서는 강남구청주택과 비치보관</p> <p>◎중구고시제3호</p> <p style="text-align: center;">주택개발재개발사업관리구역분양처분</p> <p>1. 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사업구역인 관리구역의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p>	<p>발법 제4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분양처분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분양처분된 내용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할 것이나 송달되지 않을 때에는 본 고시문으로 갈음하고, 동 분양처분된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경(주택과 및 지적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다 음</p>																																																	
<table border="1"> <tr> <th>구역명</th> <th>필수</th> <th>위 치</th> <th>면적(㎡)</th> <th>비고</th> </tr> <tr> <td>관리구역</td> <td>173</td> <td>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 196, 199일대</td> <td>29,454.3</td> <td></td> </tr> </table>	구역명	필수	위 치	면적(㎡)	비고	관리구역	173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 196, 199일대	29,454.3		<p style="text-align: right;">1990. 3. 26                  중 구 청 장 ㉔</p>																																						
구역명	필수	위 치	면적(㎡)	비고																																													
관리구역	173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 196, 199일대	29,454.3																																														

<p><b>◎노원구고시제7호</b></p> <p style="text-align: center;"><b>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b></p> <p>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 3.</p> <p style="text-align: center;">노 원 구 청 장 인</p> <p>1. 사 업 명 : 민영주택건설사업</p>	<p>2. 사업주체 : 조흥은행 직원 주택 조합</p> <p>3. 사업시행 위치 및 면적 규모</p> <p>가. 위 치 : 상계동 997-15의 37필지</p> <p>나. 대지면적 : 19,775.46㎡</p> <p>다. 건축연면적 : 42,804,9035㎡</p> <p>라. 규 모 : 아파트 7-14층 5동 397세대 (부대시설 : 노인정 및 관리동, 판매시설, 유치원)</p> <p>마. 사업시행기간 : '90. 3. - '91. 5.</p> <p>4.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변경, 이등, 폐지)</p>
---	--

구 분	등 급	류 별	면 적	연 장 기	중 점	비 고
기 정	소 로	1류	6m	126	상계동 996	상계동 997-16
변 경	소 로	1류	8m	94	상계동 997-16	상계동 1011-16
기 정	소 로	1류	8m	86	상계동 997-16	상계동 1011-37
변 경	소 로	1류	10m	60	상계동 997-12	상계동 997-16
기 정	소 로	1류	10m	62	상계동 995-7	상계동 996-4
변 경	소 로	1류	10m	38	상계동 995-7	상계동 105-8
						도시계획도로 변경(이등)

<p><b>◎성북구고시제9호</b></p> <p style="text-align: center;"><b>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b></p> <p>1. 서울시 고시제246호(76.9.24)로 도시계획사업(도로)결정고시 및 지적승인되고, 서울시 고시제565호(86.8.7)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되어 서울시고시제610호(86.8.23)로 지적고시된후, 성북구 공고제2호(89.5.11)로 공람하고 성북구 고시제4호(89.6.8)로 실시계획인가되고 성북구 고시제17호(89.9.22)로 변경인가되고, 성북구공고제19호(90.3.9)로 변경공람공고한 정릉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25조, 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2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p> <p>2. 판제서류는 성북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p>	<p>과, 주택과에 비치하고 토지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 3.</p> <p style="text-align: center;">성 북 구 청 장 인</p> <p>가. 사업시행자(추가) : 정릉동 996-155-483-11</p> <p>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동없음</p> <p>다. 사업의 규모(추가) : 도로확장 B=10m, L=140m</p> <p>라.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p> <p>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변동없음</p> <p>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p> <p>사.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관계인 : 주소·성명 : 별첨</p> <p>아. 기타사항 :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는 성북구청(토목과, 건설관리과, 주택과)비치</p>
--	---



◎성동구고시제12호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변경시행허가

1. 서울시고시제491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결정 및 같은고시 제697호(86.9.26)로 사업시행 변경되고 성동구고시제1호(88.1.6)사업시행 변경되고 성동구공고제20호(88.9.6)로 도시계획사업 완료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권한 위임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법인)변경 시행허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 (전화 450-138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3. 24

성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성동구 구의동 16-3의1일대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법인)

명칭 : 정립회관 시설확충(자립작업장 증축)

다. 사업시행자주소 : 서울시 성동구 구의동 16-3번지 일대  
성명 : 사회복지법인 정립회관 이사장 김원기

라. 사업규모

가. 사업개요

- 대 지 : 30,113제곱미터
- 기존연면적 : 8,442.41제곱미터
- 변경연면적 : 8,970.41제곱미터(증 528 제곱미터)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
  - 준공예정일 : '90. 12. 30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사회복지법인 정립회관
- 사. 토지 또는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없음

구 공 고

◎강서구공고제18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가 결정 및 지적승인한 다음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2, 서울특별시조례 제2413호에 의거 관계도서를 공고합니다.
2. 토지(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름합니다.
3.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니,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공고기간내에 공람장소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	사 업 시 행 구 간	규 모	사 업 기 간	결 정 고 시 일 자	지 적 고 시 일 자
공항동 66번지일대 도로개설공사	공항동 62의12 - 공항동 72의12	B=8m L=360m	'90. 4. - '91.12.31	서고제171호 (72.11.23)	서고제171호 (72.11.23)
화곡동 94-73간 도로개설공사	화곡동 73의100 - 화곡동 93의2간	B=6m L=332m	"	서고제186호 (73.12.3)	서고제186호 (73.12.3)

사 업 명	사 업 시 행 구 간	규 모	사 업 기 간	결 정 고 시 일 자	지 적 고 시 일 자
염창동 20-16일대 도로개설공사	염창동 20의 16 - 염창동 20의36간	B=6m L=74m	'90. 4 - '91.12.31	서고제81호 (74.6.22)	서고제81호 (84.6.22)
염창동 97번지일대 도로개설공사	염창동 88의 1 - 염창동 98의1간	B=8m L=114m	"	서고제81호 (74.6.22)	서고제81호 (74.6.22)

나. 사업의 시행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생략  
 라.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생략  
 마. 공람기간: '90. 4. 2 - '90. 4.16(14일간)  
 바. 공람장소: 강서구청 토목과, 건설관리과  
 사.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토목과(TEL 600-6405-7)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990. 3. 30  
 강 서 구 청 장

계획안을 도시계획법제16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관련도서를 보입니다.  
 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90. 3. 30 - '90. 4. 13  
 나. 공람장소: 성북구청 도시경비과  
 다. 관련도서: 공람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도면생략)

◎성북구공고제26호

도시계획안공고

1. 우리구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용의 청사, 학교) 결정 및 변경결정을 위한 도시

1990. 3. 30  
 성 북 구 청 장  
 도 시 계 획 안  
 ○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용의 청사, 학교)결정 및 변경결정(안)

· 도 로

구 분	등 급	류 별	폭원(m)	연장(m)	시 점	종 점	비 고
기 정	중 로	2	12-15	850	정릉동 977의3호	정릉동 290의43호	
변 경	중 로	2	12-15	850	"	"	

· 주 차 장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신 설	주 차 장	정릉동 산 92의 4호의 9필지	4,940	

· 공 용 의 청 사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신 설	공용의청사	중암동 16-8의 1필지	591	

· 학 교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학 교	돈암동 산 1-13의 13필지	48,520	면적감소
변 경	"	"	47,200	1,320㎡

<p><b>●서대문구공고제28호</b></p> <p><b>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b></p> <p>1.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공람공고합니다.</p> <p>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p>	<p>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통합니다.</p> <p>3. 관계서류는 서대문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 3. 30</p> <p style="text-align: center;">서 대 문 구 청 장</p> <p>가. 공람기간 : '90. 3. 1 - '90. 3.16(14일간)</p>																														
<p>나. 공람개요</p>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업 시행지의 위치</th> <th>사업의 종류</th> <th>사업의 규모</th> <th>사업 시행자</th> <th>시행기간</th> <th>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th> </tr> </thead> <tbody> <tr> <td>북아현2동 236-237간</td> <td>도시계획사업(도로)</td> <td>도로개설 B=8m L=110m</td> <td>서대문구청장</td> <td>인가일로부터 '91.12.31</td> <td>1964.7.8구획지구안 로지구, 서울시공고 제360호 환지처분</td> </tr> <tr> <td>북가좌1동 117의2 119의 91간</td> <td>"</td> <td>도로개설 B=6m L=230m</td> <td>"</td> <td>"</td> <td>서고시제105호(83.2.24) 및 서고시제159호(83.3.19)</td> </tr> <tr> <td>동명여중-천연동 120간</td> <td>"</td> <td>도로개설 B=6m L=100m</td> <td>"</td> <td>인가일로부터 '90.12.30</td> <td>서고시제11호 (69.2.18)</td> </tr> <tr> <td>북가좌1동 125의4 168의 9간</td> <td>"</td> <td>도로개설 B=6m L=130m</td> <td>"</td> <td>"</td> <td>서고시제3호 (69.1.18)</td> </tr> </tbody> </table>	사업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종류	사업의 규모	사업 시행자	시행기간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	북아현2동 236-237간	도시계획사업(도로)	도로개설 B=8m L=110m	서대문구청장	인가일로부터 '91.12.31	1964.7.8구획지구안 로지구, 서울시공고 제360호 환지처분	북가좌1동 117의2 119의 91간	"	도로개설 B=6m L=230m	"	"	서고시제105호(83.2.24) 및 서고시제159호(83.3.19)	동명여중-천연동 120간	"	도로개설 B=6m L=100m	"	인가일로부터 '90.12.30	서고시제11호 (69.2.18)	북가좌1동 125의4 168의 9간	"	도로개설 B=6m L=130m	"	"	서고시제3호 (69.1.18)	<p>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및소유권인의 권리명세 : 별첨(생략)</p> <p>라. 위치도 : 별첨(생략)</p>
사업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종류	사업의 규모	사업 시행자	시행기간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																										
북아현2동 236-237간	도시계획사업(도로)	도로개설 B=8m L=110m	서대문구청장	인가일로부터 '91.12.31	1964.7.8구획지구안 로지구, 서울시공고 제360호 환지처분																										
북가좌1동 117의2 119의 91간	"	도로개설 B=6m L=230m	"	"	서고시제105호(83.2.24) 및 서고시제159호(83.3.19)																										
동명여중-천연동 120간	"	도로개설 B=6m L=100m	"	인가일로부터 '90.12.30	서고시제11호 (69.2.18)																										
북가좌1동 125의4 168의 9간	"	도로개설 B=6m L=130m	"	"	서고시제3호 (69.1.18)																										
<p><b>●송파구공고제36호</b></p> <p><b>도시계획사업(공원시설설치) 석촌호수공원 1단계 보완시설관리기탁</b></p> <p>1. 서울특별시서고시제190호(89.4.17)로 변경 시행 허가한 석촌호수공원 보완시설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도시공원법 제6조2항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도시공원 공원시설 관리위탁하였기 공고합니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 3. 23</p> <p style="text-align: center;">송 파 구 청 장</p> <p>가. 사업명칭 : 석촌호수공원공원시설관리위탁</p> <p>나. 위치 : 서울특별시송파구장일동47번지의1필지</p> <p>다. 사용면적 : 113,325㎡</p> <p>라. 시설부지면적 : 19,080㎡</p> <p>마. 관리위탁 시설 내용</p> <p>조경시설(분수의 1종 5개소), 휴양시설(야외탁자의1종), 유희시설(유람선의 13종), 교양시설(인도의성의 1종), 편의시설(역삼휴게소의 5종), 공원관리시설(관리사무소의 2종), 도로 및 광장(도로의 3종)</p>																														

바. 관리수탁자: (주)호렐롯데  
대표이사 김주현  
사. 관리위탁기간: 1990. 3. 23부터 전제 도시계획 사업준공과 동시 기부채납시까지.

관인 규정 제5조, 제8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인 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구 반포 제1동의 개각된 관인을 관인규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인 규칙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초구공고제105호




관인신조공고

1990. 3. 26




서초구청장

1. 관인사용 개시일: 1990년 4월 2일

2. 신규사용인

인명			
공인명	반포제1동장의인	반포제1동장의인 및 계인 (민원사무전용)	

3. 폐기인

인명			
공인명	반포제1동장의인	반포제1동장의인 및 계인 (민원사무전용)	

사 령

◎ 1990년 3월 23일자 기술직 공무원 징계처분령 제106호

성명	발령사항	연부서	직급
안종근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1, 2호에 의거 "파면"에 처함.	내무국	지방공업기정
임동혁	"	한강공원관리사업소	지방화공기좌
손병국	불문경고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 의결)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공업기정
안기환	"	하수처리과	지방토목기좌

◎ 1990년 3월 27일자		4급공무원 승진임용		령 제107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윤해성	지방의무기정에 임함. 성동구보건소장에 보함.	관악구	지방의무기좌	
5급공무원 면직		령 제10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호급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중구	지방의무기좌	
4급공무원 면직		령 제109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장치옥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대문병원	보건기장	
기술직 3급공무원 신규임용		령 제110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장기옥	지방의무부기감에 임함. 서대문병원장에 보함.	신규		
기술직 4급공무원 신규임용		령 제111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호급	지방의무기정에 임함. 중구보건소장에 보함.	신규		
기능직 공무원(지방운전원) 추서		령 제112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장기염	지방운전원(9등급)에 추서함.	양천구	지방운전원(10등급)	
◎ 1990년 4월 1일자		3급 공무원 승진임용		령 제114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병규	지방부이사관 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립체육시설 관리사업소장 직 두 대리	지방서기관	
서울특별시				

[별지 제2호서시]

출 석 통 지 서

인 계 사 람	성 명	김 종 덕 (金鍾德)	소 속	양천구 도시정비과
	본 계	부산직할시 영도구 봉래동 4가 149	직 명	기방토목기사
주 소	서울 용산구 동부여촌동 단암아파트 씨동 202호			
출석 이유	경계심의 및 진술			
출석 일시	1990 년 4 월 12 일 14시 00 분			
출석 장소	기획상황실			
유의 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기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개최 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권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의 규정에 위거 의인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1990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장

귀하



진 술 권 포 기 서


인 계 사 람	성 명		소 속		직 명	
	본 계					
	주 소					

199 년 월 일 시에 개최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 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199 년 월 일

성 명

서울특별시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b>출 석 통 지 서</b>	
인 적 사 랑	성 명	강 장 식 (姜 昌 植)	소 속 구로구 도서정면과
	직 명		직 명 지역직기원
사 랑	본 직	전북 남원군 사대면 오산리	
랑	주 소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4번지	
출 석 이 유		정계 심의당 진술	
출 석 일 시		1990년 3월 12일 14시 00분	
출 석 장 소		국회상용실	
유 의 사 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기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 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권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의 규정이 위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1990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b>진 술 권 포 기 서</b>			
인 적 사 랑	성 명	소 속	직 명
	본 직		
랑	주 소		
199년 월 일 시에 개최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199년 월 일 성 명			
서울특별시제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